

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부품제작자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
	부품명	형식
최초부품제작자		
변경전 부품	제원관리번호	안전기준 적용연도

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(※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제출합니다)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부품제작자등

(서명 또는 인)

성능시험대행자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자동차부품 제원표 2.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. 그 밖의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